

『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』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6년 8월 일

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

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1. 제안이유

- 가. 2016년 제7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과 함께 저출산, 청년실업, 물류 항만·공항, 중국과의 인적·물적 교류 등 4개 정책연구과제를 중심으로 한 「동북아 중심도시를 위한 범시민 협의체」 발족,
- 나. 정책의회를 만들고자 정책연구자문위원을 시민단체, 박사, 교수 등 분야별 전문가를 추가 선임하여 의정발전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의정발전자문위원회를 3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(안 제3조)
- 나. 분과위원회를 7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(안 제6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22일(월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(참조 : 인천광역시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, ☎ 032-440-6203, FAX 032-440-8762, 이메일 skcha11@korea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주소·성명(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) 및 전화번호

제출자	해당 조항	찬반여부 및 사유	비고
○주 소 : ○성 명 : ○연락처 :			

※ 다른 서식 사용 가능

4. 참고자료

-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 일부개정
조례안 1부.

인천광역시조례 제 호

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2항 중 “30명”을 “35명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6명”을 “7명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<u>30명</u> 이내 의 위원을 구성한다. ② (생 략)	제3조(구성) ① ----- <u>35명</u> --- ----- . ② (현행과 같음)
제6조(분과위원회) ① 위원회는 분 야별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직무에 따른 분과위 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 며, 각 분과위원회는 <u>6명</u>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② (생 략)	제6조(분과위원회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7명</u> --- ----- . ② (현행과 같음)

관계법령 발췌사항

관계법령	○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사항 없음”
관련자료	“해당사항 없음”

관련법령 발췌사항

☐ 지방자치법

제116조의2(자문기관의 설치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·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